고용노동부	보도참고자료	한국판뉴딜	
보도일시	2021. 12. 28.(화) 배포 즉시 / 총 2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	반 장 박병기 사무관 백경남	044-202-7292 044-202-7213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, 국무회의 보고

■ **하반기 신청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회를 갖지 못한 '21년 9월 채용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**

<1> 정부는 **12월 28일(화) 국무회의**에서 **「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」에 대해 보고**하였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추진배경

○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* 지원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하였으나,

-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**함에 따라,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**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**

*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사업주가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 지원(6개월 6백만원, 계속 고용 시 6개월 360만원 추가, 연 최대 960만원), '20~'21년 한시사업

** 하반기 이후 채용 증가로 9월 말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증가하여 당초 1차추경 지원 인원(4만명) 목표가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연도 중 신규 지원 종료(10.31.) → 9월 채용자는 장려금 신청 기회 상실

-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서도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방안을 보고함

2 지원내용

○ **'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'**은

① **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의 사업주**가

* 단, 사행·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

②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**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'21년 9월 중 정규직***으로 **신규 채용**한 경우

* **기간의 정함이 없는** 근로계약한 자(단,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필요)

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
* 6개월 단위(**월할 지원 없음**) 지원금 신청(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% 범위 내)

3 향후일정

○ 정부는 **'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'**을 위해 **연말까지 사업을 공고**하고 소요 재원 파악 등을 위해 **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신청서**를 받을 예정임 ※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및 고용센터

* 사전 참여 신청자에 한 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주는 신청 기간(1.3.~1.24.) 내에 사전신청서를 제출 해야 함

** 사전신청서를 기초로 소요 예산 추계 및 필요시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

○ 고용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**3월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**할 예정

<2> **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**은 "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사업주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다."라며,

○ "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**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**"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회복지원반 백경남 사무관(☎044-202-721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